

#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윤석진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56
----------	------

제출년월일 : 2016. 6. 13.  
제출자 : 윤석진 의원 등 8명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를 5월·6월 중에 개최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의 출납 폐쇄기한이 12월 31일로 변경되어,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6월말까지 지방의회에서 결산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협조 요청함에 따라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등 효율적인 회기 운영을 위해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연간 회의총일수와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조)
-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 정례회 집회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3. 개정조례안 : 붙임1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 5. 관련법령 : 붙임3

## 6. 예산수반사항 : 없음

## 7. 입법예고 결과 : 없음

\* 예고기간 : 2016. 4. 8. ~ 4. 13.

## 8. 기타 참고사항 : 집행부 검토 의견서

## [붙임1]

###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제1호 중 “50일”을 “55일”로 한다.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21일”을 “7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8일”을 “26일”로 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집회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2]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p><b>제2조(연간 회의총일수)</b> 법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p> <p><u>&lt;신설&gt;</u></p>	<p><b>제2조(연간 회의총일수)</b> -----</p> <p>-----</p> <p>-----</p> <p>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p>
<p><b>제3조(회기) (생략)</b></p> <p>1.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의 일수는 합하여 <u>50일</u> 이내로 한다.</p>	<p><b>제3조(회기) (생략)</b></p> <p>1.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의 일수는 합하여 <u>55일</u> 이내로 한다.</p>
<p><b>제4조(정례회집회)</b> 영 제54조의3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u></p>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u>21일</u>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p> <p>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u>28일</u>에 집회한다.</p>	<p><b>제4조(정례회집회)</b> -----</p> <p>-----</p> <p>---. <u>다만, 그날이 토요일과 「환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집회한다.</u></p>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u>7일</u>에 집회한다.-----</p> <p>-----.</p> <p>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u>26일</u>에 집회한다.</p>

#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윤석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56
----------	------

제출년월일 : 2016. 6. .  
제출자 : 윤석진 의원 등 명

### 1. 수정이유

- 행정사무감사, 결산 및 예산안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정례회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의 총일수를 수정(연장)하고자 함.
-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으로써 2016년도 회기 및 의회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수정함.

### 2. 수정 주요골자

- 정례회 회의 총일수를 55일에서 60일로 연장함. (안 제3조)
- 조례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에서 공포한 날로 변경함. (부 칙)

##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1호 중 “55일” 을 “60일”로 한다.

안 부칙 중 “2017년 1월 1일” 을 “공포한 날”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법 제47조에 따른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p> <p>&lt;신설&gt;</p>	<p>제2조(연간 회의총일수)</p> <p>-----</p> <p>-----</p> <p>-----</p> <p>-----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p>	<p>제2조(연간 회의총일수)</p> <p>(개정안과 같음)</p>
<p>제3조(회기) (생략)</p> <p>1.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u>50일</u> 이내로 한다.</p>	<p>제3조(회기) (생략)</p> <p>1.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u>55일</u> 이내로 한다.</p>	<p>제3조(회기) (생략)</p> <p>1.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u>60일</u> 이내로 한다.</p>
<p>제4조(정례회집회)영 제54조의3항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p>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u>21</u>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p> <p>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u>28</u>일에 집회한다.</p>	<p>제4조(정례회집회)</p> <p>-----</p> <p>-----</p> <p>----- 다만, 그날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 날에 집회한다.</p> <p>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u>7</u>일에 집회한다.</p> <p>-----</p> <p>-----</p> <p>-----</p> <p>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u>26</u>일에 집회한다.</p>	<p>제4조(정례회집회)</p> <p>(개정안과 같음)</p> <p>1.(개정안과 같음)</p> <p>2.(개정안과 같음)</p>
	<p>부 칙</p> <p>이 조례는 <u>2017년 1월 1일</u> 부터 시행한다.</p>	<p>부 칙</p> <p>이 조례는 <u>공포한 날부터</u> 시행한다.</p>